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9

발의연월일: 2021. 1. 28.

발 의 자:이형석·김병주·송갑석

안규백 • 양향자 • 정일영

정필모 • 조오섭 • 한병도

한준호 · 홍익표 · 허 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특약의 경우 무효로 하게 되어 있음. 또한 저가입찰에 대한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입찰 금액도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

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13조제4항 신설 및 안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	제6조(계약의 원칙) ①
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	
야 <u>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u>	<u>한다</u> .
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	
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	
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	
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제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u>2.</u> ~ <u>5.</u> (생 략)

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히	<u> </u>
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	7
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호	<u>}</u>
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건	}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약	H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침	<u>}</u>
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ㅇ	<u>}</u>
<u>니 된다.</u>	

- 1. 재료비·노무비·경비
-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34조(이의신청) ①

- 1. (현행과 같음)
-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한 사항
- 3.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10일</u>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u>20일</u>
15일
③
<u>15일</u> -
4
<u>20일</u>